



보도

2026.3.30.(월) 조간

배포

2026.3.27.(금)

사채업자 '이실장'이 당신을 노린다?!!

- 최근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수법과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-

■ 소비자경보 2026 - 11호
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

I 배경

- 금융감독원이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 신고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,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'이실장'에 대한 신고가 급증(총 62건)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[피해신고센터 신고·대응현황은 '붙임' 참조]
 - ※ ('25.9월) 1건 → (10월) 4건 → (11월) 5건 → (12월) 7건 → ('26.1월) 33건 → (2월) 12건
 - 이들은 대출 중개-실행-추심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,
 -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,
 -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·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,
 - 상황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.
-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업자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①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,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!
- ②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,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!
- ③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,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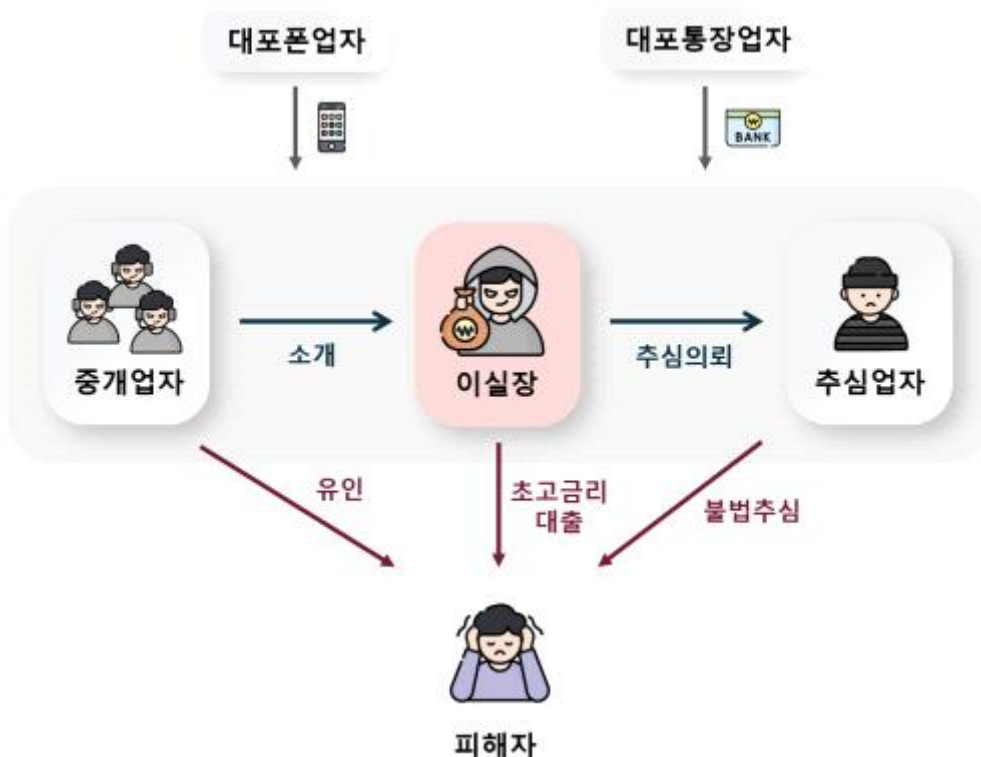
※ 금융감독원은 '이실장'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, 계좌 거래정지 요청 및 휴대전화 이용중지, 무효확인서 발급,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조치

II 범죄 수법 및 피해자 분석

1 범죄 수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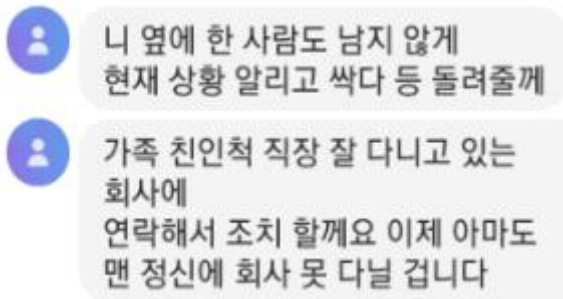
- 불법고금리대출의 중개 - 실행 - 추심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며, 대포폰·통장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
 - (중개)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*,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실장(불법사금융업자)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
 - *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하더라도, '통화품질 불량', '신용점수 미달' 등의 사유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유도
 - (대출) 이실장은 이른바 30/55*와 같은 초단기·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,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
 - *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
 - (추심)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,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

불법사금융 구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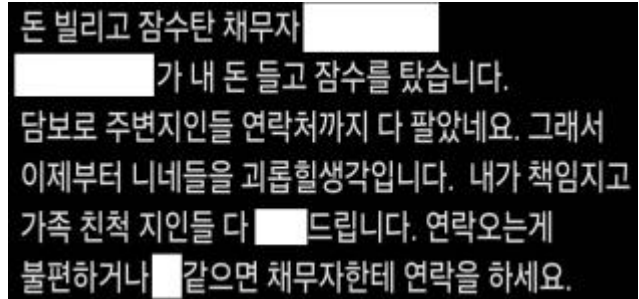


- **(피해자 현황)** 생계 유지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
 - (다양한 직업군) 직업은 사무직, 일용직, 현역·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존재
 - (생계형 대출) 주 대출 목적은 생활비, 의료비, 他 채무 상환 등
 - (다중 채무자) 저신용자면서, 제도권 대출(500~3,000만원 수준) 외 다수의 불법사금융(1,000만원 이하)을 동시 이용
- **(피해사례)** 고금리·불법추심으로 인한 사회·경제생활 피해 및 2차 피해
 - (지인 추심 및 협박)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유폐하고, 협박 및 욕설 메시지 발송
 - (일상생활 파탄)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,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, 실직·이혼·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

피해자 협박 사례



피해자의 지인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



[참고] 이실장 피해사례

-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**등록 대출 중개 사이트**에서 한도를 조회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음
- 상담 과정에서 **통신상태 불량** 등을 핑계로 **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유도**한 뒤 A씨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**고금리 대출을 강요**함
- 또한 약 100만 원 대출 요청 시 **고의로** 20~30만 원이 **부족하게 지급**하고, 모자란 금액은 다른 업자에게 빌리도록 연계하는 이른바 **'돌림대출' 수법으로 채무를 엮음**
- 나아가 A씨의 상황이 지연될 때에는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확보한 **지인, 가족의 연락처로 추심 문자를 무단 발송**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

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

① **등록 대부업체**로 연락했음에도 **통화품질 불량, 신용점수 미달** 등을 사유로 **다른 곳으로 연락**을 유도하는 경우 **불법사금융**을 **항상 의심!**

-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으나,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개인 휴대전화나 SNS 메신저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특히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필요

② 대출 과정에서 **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, 가족 및 지인 연락처** 등을 요구하는 경우 **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!**

- 대출 과정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, 가족·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연체할 경우 유포하여 협박할 목적이므로 **절대 주지 말고, 대출 진행도 즉시 중단**하여야 함

③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,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**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**을 **적극 활용!**

-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*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람

* 신고·상담 ☎ [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 1600-5500, [금감원] 1332, [경찰] 112

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

-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, 수사의뢰,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
 - 전담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, 증빙자료 준비,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, 고용·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	책임자	팀 장	김민형	(02-3145-8280)
		담당자	조사역	신우용	(02-3145-8284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장종현	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 임	송상훈	(02-3145-8142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전혜영	(02-3145-8285)
		담당자	선 임	이성지	(02-3145-8523)
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팀 장	민혁진	(02-3145-8277)	
	담당자	조사역	송신덕	(02-3145-8276)	

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연이율 60%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 신고·상담 실적 및 대응·조치현황

- **(피해신고)** '25년 중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7,538건으로 전년(15,397건) 대비 2,141건(+13.9%) 증가
 - **[불법대부* : 16,988건(+14.9%)]** 온라인 불법광고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(9,293건, +27.1%), 불법채권추심(4,280건, +45.2%)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
 - * (주요 유형)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요구, 선이자 공제, 부당한 연체료 부과 및 본인 이외 가족·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등
 -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내용과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함에 따라 최근 피해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
 - **[유사수신 : 550건(△10.0%)]** 신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신종·신기술 사업 투자 등을 빙자한 온라인 피해사태가 지속 발생
 - ※ 불법사금융 제도 문의 등 “단순 문의 상담”은 50,307건으로 전년(47,790건)보다 2,517건 증가(+5.3%)
 - 범죄 일당들이 유사수신 규제*를 회피하기 위해,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을 이용한 자금모집시 원금 보장을 내세우지 않는 등 변형된 행태로 범죄를 진행하면서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감소**한 것으로 추정
 - * '24.5월부터 시행된 개정 「유사수신행위법」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모집도 유사수신행위로 명시
 - ** 해당 범죄는 유사수신이 아닌 사기 등으로 분류되어 신고
- **(대응·조치 현황)**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중심으로 '25년 중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
 - **[피해예방]**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 등에 대해 전화 번호 이용중지(3,843건)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(25,547건)를 관계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)에 의뢰
 -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전년도(5,573건) 대비 31.0% 감소*한 반면, 온라인 게시물 삭제는 전년도(19,870건) 대비 28.6% 증가

* 지난해 7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, 휴대전화 보다는 SNS·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가 증가하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, 이에 금융감독원도 카카오톡·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도입('25.6월)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 중

○ [수사지원]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

- '25년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3.9% 증가함에 따라, 수사의뢰 역시 전년(498건) 대비 16.9% 증가

○ [피해구제]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2,294건에 대해 「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」를 안내하고 피해구제를 지원*

*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: 11,083건

-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안내 건수는 전년(3,001건) 대비 309.7% 증가하였는데, '25.4월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스템 개선*에 주로 기인

* ① 신청양식 간소화(주관식→객관식), ② 온·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, ③ 채무자대리인 신청·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(☎1332→3번→6번) 개설 등

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 신고 및 대응·조치현황

구분	(단위 : 건, %)			<대응·조치현황>	
	'24년	'25년	증감(증감율)	구분	건수(전년대비 증감률)
불법대부	14,786	16,988	2,202 (+14.9)	불법광고차단	29,390건(전년대비 +15.5%)
불법사금융	7,314	9,293	1,979 (+27.1)	* 전화번호 이용중지, 온라인 게시물 삭제	
채권추심	2,947	4,280	1,333 (+45.2)	수사의뢰 등	582건(전년대비 +16.9%)
고금리	2,145	1,904	△241(△11.2)	* 불법사금융대부, 불법채권추심, 유사수신 등	
불법광고	1,673	812	△861(△51.5)	채무자대리인	12,294건(전년대비 +309.7%)
불법수수료	707	699	△8(△1.1)	*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(우려)자에 대한 피해구제	
유사수신	611	550	△61(△10.0)		
합계	15,397	17,538	2,141 (+13.9)		

(참고)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① 불법 채권추심

- ▶ 피해자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 20만원을 차용(일주일 뒤 40만원 상환 조건)하기 위해, 신분증 및 차용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전송하고, 네이버 주소록을 통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제공
- ▶ 일주일 뒤 상환을 못 하자 불법사금융업자는 하루 이자 5만원씩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였고,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욕설로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
- ▶ 이후로도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동생의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, 나아가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음

⇒ (유의사항) 가족·지인의 연락처,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, 불법추심 피해(우려)발생시 금감원·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을 활용

② 불법사금융업

- ▶ 자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중에 있던 피해자는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상황에서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중인 대부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음
- ▶ 잠시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이 왔고, 피해자는 등록대부업체인 줄 알고 원금 100만원을 차용(일주일 뒤 180만원 상환 조건)하면서 차용증 및 신분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전송
- ▶ 피해자가 원금 일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“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심하겠다”는 등의 협박을 하며 불법추심을 예고

⇒ (유의사항)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*하고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자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·경찰에 제보

* (확인방법) 파인(fine.fss.or.kr) → 금융회사 →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